의 안 번 호

2073

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4. 7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4. 7.(금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4. 25.(화)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예산실장 김영환)

가. 제안이유

○ 조직진단 용역 결과 및 안전업무 전담인력 배치 요청 의견을 반영하여,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「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2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증원을 위해 중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O 정원 총수: 31명 → **33명 (증2)**
- O 직급별 정원조정
 - 1) 임 원: 1명 (변동없음)
 - 2) 일반직: 19명 → 21명 (증2)
 - 3급: 2명 (변동없음)
 - 4급: 2명 (변동없음)
 - 5급: 3명 (변동없음)
 - 6급: 4명 (변동없음)

- 16 (제254회-본회의제2차부록)
 - 7급: 8명 → 10명 (증2)
 - 3) 업무직(무기계약직): 11명 (변동없음)

다. 근거법규

O 「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27조제3항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옥범)

- 본 동의안은 조직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「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2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증원을 위해 중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,
- O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27조(감독) ①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.

-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1.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- 2. 인사규정, 임직원의 보수규정(연봉제규정, 복리후생규정 포함) 및 퇴직금규정 (명예퇴직규정 포함)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
- 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에 관하여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